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07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윤호중·문진석・황정아

윤종군 • 홍기원 • 이기헌

조계원 · 조승래 · 이병진

정성호 · 한민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8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연간 출산율이 0.6명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커서 현행공제제도로는 저출생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제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800만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액은 1천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5항 전단 중 "400만원"을 "800만원"으로, "800만원"을 "1천6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	⑤		
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u>400만원</u> 을 초과하	<u>800만원</u>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			
의 합계액이 연 <u>800만원</u> (「소	<u>1천600만원</u>		
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			
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			
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 ① (생 략)	⑥ ~ ① (현행과 같음)		